

## 2026년도 광주광역시 마을기업 모집 공고

「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(행정안전부)」에 따라 2026년 광주광역시 마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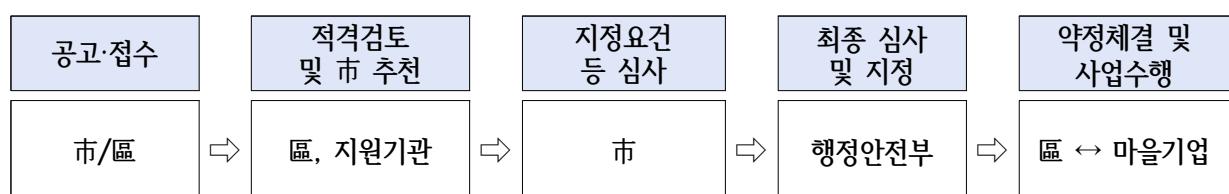
2025. 11. 19.

### 광 주 광 역 시 장

#### I 공모 개요

- 사업명 :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
- 접수기간 : 2025. 11. 19.(수) ~ 2025. 12. 5.(금)
- 모집유형 : 예비, 신규(1회차), 재지정(2회차), 고도화(3회차) 마을기업  
※ 우수, 모두애 마을기업 추후 별도 선정(행정안전부 지침)
- 선정규모 : 미정 \* 모집현황, 행정안전부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
- 선정방법 : 접수(區) → 지정요건심사(市) → 최종심사 및 지정(행안부)
- 지원내용 : 인건비, 운영비,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\* 지원
  - 예비 지원없음, 신규(1회차) 5천만원, 재지정(2회차) 3천만원, 고도화(3회차) 2천만원
  - 마을기업 자부담 : 보조금의 20% 이상(청년 마을기업은 10% 이상)
- \* 마을기업 회계비목: [붙임2]마을기업 사업비 편성 참고
- \* 추후 정부예산(안)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 및 지원내용 변동될 수 있음

#### II 세부 추진절차



\* 예비마을기업은 市 지정 /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### III

## 지정 요건 및 제외 대상

### □ 공통 요건

- 「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른 공동체성, 공공성, 지역성, 기업성 등 충족[붙임 1]마을기업 지정 요건 참고
  - 보조금의 20% 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(청년마을기업은 10% 이상)

#### 관련 특례

- 청년마을기업
  - (배경) 마을기업에 청년들이 참여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
  - (요건) 지역주민 5인 이상+지역주민 비율 50% 이상+청년비율 30%~50%
  - (특례) 자부담 경감(20%→10%), 주민비율 완화(70%→50%), 심사 가점(최대 3점)

### □ 예비 마을기업

- (신청자격) 마을 또는 단체(5인 이상 참여하는 非법인 공동체)등도 가능
  -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 조건 / 입문교육 이수
- (지정기간) 약정 체결한 날부터 2년
  - 지정기간 이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지정 취소

### □ 신규(1회차), 재지정(2회차), 고도화(3회차) 마을기업

- (신청자격) 의무교육 이수 및 지정요건 충족한 마을기업

#### 마을기업 교육

- 교육운영, 이수확인 : 마을기업 지원기관(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)
  - 교육이수 인원 : 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
  - 교육이수 협력
    - 교육 마지막날로부터 만 2년(고도화 만 1년), 市 심사일 기준 협력유지 필수
  - 교육 구성
    - 예비 : 입문교육 7시간 이수
    - 신규(1회차) : 신규교육 총17시간(입문교육 7시간, 기초교육 7시간, 심화교육 3시간)
    - 재지정(2회차), 고도화(3회차) : 전문교육 총6시간(기본교육 4시간, 심화교육 2시간)
- \* 입문교육 및 기본교육은 서류접수 전까지 의무 이수  
기초교육 및 심화교육은 행안부 지정 후 보조금 교부 전까지 이수

## □ 제외 대상
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
 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
  -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
  - 법령,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
-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
  -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
  - 타 보조사업에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
  -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 중복 지원 불가
    - ※ 신규·재지정·고도화, 재도약, 우수·모두애 및 마을기업 연합사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
  - 그 외 지방자치단체가 중복 지원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

## IV 신청 및 접수

- 접수기간 : 2025. 11. 19.(수) ~ 2025. 12. 5.(금) 18:00

※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(09:00~18:00)

- 접수방법 : 방문 접수 (우편 접수 불가)

- 접수처 : 법인 소재지 관할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 부서

| 기관명  | 부서명      | 전화번호(062)  | 주 소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동구청  | 마을자치과    | 608 - 4632 | 광주 동구 서남로 1(서석동)       |
| 서구청  | 일자리청년지원과 | 360 - 7622 | 광주 서구 경열로 33(농성동)      |
| 남구청  | 일자리정책과   | 607 - 2667 | 광주 남구 봉선로 1(봉선동)       |
| 북구청  | 일자리정책과   | 410 - 6586 | 광주 북구 우치로 77(용봉동)      |
| 광산구청 | 시민경제과    | 960 - 8402 | 광주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(송정동) |

## 신청 서류

※ 예비는 법인 관련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

| 구분    | 신청 서류  |  |
|-------|--|--|
| 기본 서류 | ① 사업신청서(서식1-1~1-4)<br>② 회원 명단(서식2)<br>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(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<br>④ 법인등기부등본(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)<br>⑤ 법인 회의록 사본(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)<br>⑥ 법인 정관 사본<br>⑦ 법인 통장(자부담 금액 입금 내역 정리)<br>⑧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서식3),<br>⑨ 서약서(서식4) |  |
|       | 1회차<br>(신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</li> <li>- 예비 → 1회차 신청 마을기업인 경우<br/>예비마을기업 약정서, (전년도)실적보고서, 정산서류, 재무제표</li> </ul>   |  |
|       | 2회차<br>(재지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</li> <li>- 실적보고서(전년도), 정산서류(1회차), 재무제표(전년도)</li> </ul>   |  |
|       | 3회차<br>(고도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</li> <li>- 실적보고서(전년도), 정산서류(2회차), 재무제표(전년도)</li> </ul>   |  |
|       |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<br>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(계약기간 명시)<br>③ 인허가증명서 사본(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: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)<br>④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<br>⑤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,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<br>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(법인 회의록, 보조금 관련 서류 등)  |  |
|       |  |  |
|       |  |  |
|       |  |  |
|       |  |  |
|       |  |  |

※ 불가피하게 마을기업 신청 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, 시 심사 이전에 반드시 이수하여 확인서 제출(미제출 시 심사 제외)

## V 심사 및 결과발표

- 심사방법 : 심사위원회\*를 구성하여 심사기준\*\*에 따라 마을기업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, 그간의 사업성과,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
-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심사 대상 기업의 사업계획 발표 후 심사(대면심사)
  - 심사위원 평균 점수 80점 이상만 우선순위 부여, 80점 미만은 탈락

\* 7인 이상의 민관위원(민간위원 50% 이상)      \*\*[붙임 3]심사 기준 참고

- 심사일정 및 결과 발표
    - 광주광역시 심사 : 2026. 1월초
    - 행정안전부 최종심사 및 선정 : 2026. 2월중
    - 선정결과 발표 : 2026. 2월중(자치구→기업)

## V 유의사항 및 문의처

-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, 신청서 기재 사항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
  - 신청 관련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, 평가대상에서 제외 혹은 선정 취소되며 그에 따른 법적책임이 부과됨
  - 기업은 사전에 공고 내용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제반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
  -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  - 심사 관련 사항은 광주광역시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
  - 상기 공고 사항은 제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  -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(행정안전부)」을 따름
  - 문의처  
※ 신청·접수 관련 문의 : 자치구 담당부서  
- 교육·컨설팅 문의 :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정책팀 062-531-6667(ARS 2번)  
- 기타 문의 : 광주광역시 노동일자리정책관 사회적경제팀 062-613-1293

## **붙임 1. 마을기업 공통 지정 요건**

2. 마을기업 사업비 편성 기준
  3. 마을기업 지정심사 기준

## 별첨 1. 2026년 마을기업 모집 공고 서식

- ## 2.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

## 붙임 1

## 마을기업 공통 지정 요건

| 구분   | 마을기업 지정 요건  |
|------|---|
| 공동체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①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마을기업 회원(출자자)과 법인 회원(출자자) 동일,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동일,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</li></ul></li><li>②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(출자자)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마을규모, 지역범위,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</li><li>※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</li></ul></li><li>③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</li><li>④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</li><li>⑤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출자자는 출자금을 최대한 균등한 비율로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% 이하,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* 모두의 지분 합이 50% 이하</li></ul></li></ul> <p>*특수관계인: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, 형제자매</p> |
| 공공성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①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·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,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</li><li>②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, 일자리 및 소득 창출,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</li><li>③ 마을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</li><li>④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,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주민총회,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·운영에 관한 의견수렴 권장</li></ul></li><li>⑤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, 선거홍보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음</li><li>-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</li></ul></li></ul>  |
| 지역성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①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·운영되어야 함</li><li>②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(유·무형의 인적·물적 자원)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</li><li>③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</li><li>④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,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 이어야 함</li><li>-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,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% 이상 포함되어야 함</li></ul></li><li>⑤ 마을기업은 지역 내에서 생산·소비·교환·분배가 이루어지는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</li><li>⑥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함(근로자의 70% 이상을 주민으로 고용 권장)</li></ul>  |
| 기업성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①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</li><li>②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사업수행 실적, 인적·기술적 역량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</li></ul></li><li>③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(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 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)</li></ul></li><li>④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하여야 함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순이익이 있을 때는 다음 연도 사업 운영이나 장기적인 사업확장을 위해 순이익의 30% 이상을 적립하도록 노력</li></ul></li><li>⑤ 마을기업 사업은 마을기업 대표 또는 이사들의 개인적인 영리활동과는 분리되는 별도의 사업이어야 함</li></ul>  |

## ❖ 사업비 : 보조금 + 자부담

- 보조금 : 마을기업 지원을 위하여 행안부 및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
- 자부담 :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마을기업 회원들이 출자한 금액(보조금의 10~20% 이상)  
예) 보조금이 5,000만원인 경우, 자부담액은 1,000만원 이상 (이 경우 사업비 6,000만원)

**예비 마을기업**

- 주로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개발, 교육, 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
- 사업비 세목 구성, 사용의 적정성은 광역지자체 심사과정에서 판단

**1~3차 마을기업****【인건비(보수·일용임금)】**

- 총사업비의 20% 이하로 편성
  - ※ 사회서비스 제공형, 마을관리형은 인건비를 총사업비의 50%까지 편성 가능
- 마을기업 사업비(보조금+자부담)로 마을기업의 대표, 이사, 감사 등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임원에게 보수와 같은 인건비성 경비 지급 불가\*
  - \* 보조사업비가 아닌 마을기업 자체 자금으로는 지급 가능
    - 등기임원을 제외한 마을기업 회원 고용시,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가능
- 인건비는 약정체결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따라야 함

**【운영비】****(일반수용비)**

- 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
  - 포장재는 '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'에 편성(사업비의 10% 이하)
- 전문가 활용비
  - 외래강사와 외부전문가에 한하여 지급 가능
  - 마을기업의 임직원(직계존비속을 포함) 및 회원 등에게는 지급 불가
  - 강사비, 컨설팅 비용은 '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'을 준용하되 교통비 추가 지급은 불가

**(임차료)**

- 임차료 중 토지와 건물에 대한 비용은 사업비의 20% 이하로 편성

### (재료비)

- 사업비의 20% 이하로 편성

### (기타)

- 기타 항목\*의 총합 : 총사업비의 3% 이내로 편성

\* '일반수용비' 중 '사무용품 구입비', '소모성 물품 구입비' '공공요금 및 제세'

## **【건설비(시설비)】**

- 시설비 중 설계비는 공사비의 4% 미만으로 편성·집행 가능

## **【자산취득비】**

- 자산취득비 집행은 마을기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하며,  
한시적(1~2개월)으로 필요한 물품은 가급적 단기 임대 활용
  -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은 자산성 물품의 취득은 불가

※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물품 등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 사업 내용의 변경 절차 진행

## [참고] 마을기업 회계 비목

| 보조비목 | 보조세목명     | 세부항목 및 설명  |
|------|-----------|--|
| 인건비  | 보수        |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|
|      | 일용임금      | 일용직,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  |
| 운영비  | 일반수용비     | 1. 사무용품 구입비  |
|      |           | 2. 인쇄비 및 유인비<br>- 책자, 전단,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 |
|      |           | 3. 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<br>- 현수막, 간판 등 홍보용 물품제작비   |
|      |           | 4. 소모성 물품 구입비  |
|      |           | 5. 공고료 및 광고료<br>- tv, 신문, 잡지,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|
|      |           | 6. 전문가 활용비<br>- 외부 강사료 및 전문가 컨설팅 비용  |
|      | 공공요금 및 제세 | 1. 공공요금<br>- 우편요금, 전화요금, 전기·가스료, 상하수도료,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  |
| 건설비  | 임차료       | 1.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, 건물, 시설, 장비, 물품 등의 임차료   |
|      | 시설장비 유지비  | 1. 건물 및 건축설비(구축물, 기계장치), 공구, 기구, 비품,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<br>2.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(노무비와 제비용 포함)   |
|      | 재료비       |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(식물 및 종자 등 포함)   |
|      | 시설비       | 1. 건물, 공작물, 구축물, 대규모 기계장치,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<br>2. 직영공사일 경우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·노임·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<br>3. 건물, 기계, 기구,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(재료비 포함)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|
| 유형자산 | 자산취득비     | 1. 건물 및 대규모 기계, 기구, 차량 등의 취득비<br>2. 차량, 운반구 및 공구·기구 비품<br>3. 기계기구 및 사무집기류<br>4. 서류함, 책상, 의자, 전화기 등 사무용집기류의 구입비   |

### 붙임 3

### 마을기업 지정심사 기준

#### ○ 1회차(신규) 마을기업

\* 예비 마을기업 : 1회차(신규) 지표 준용

| 심사항목       | 배점   | 구분  | 심사지표   |
|------------|------|---|--|
| 공동체성       | 30   | 정량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출자자수 : (상) 20인이상 (중) 10~19인, (하) 5~9인</li> <li>■ 1인 최대 지분율, 특수관계인 지분율</li> <li>■ 입문교육 이수</li> </ul>   |
|            |      | 정성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</li> <li>■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</li> <li>■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</li> <li>■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</li> </ul>   |
| 공공성        | 20   | 정량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,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</li> <li>■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(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)</li> </ul>   |
|            |      | 정성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</li> <li>■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</li> <li>■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</li> </ul>  |
| 지역성        | 20   | 정량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</li> <li>■ 사업장의 지역내 소재 여부</li> <li>■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정도</li> </ul>   |
|            |      | 정성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</li> <li>■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 (지역자원 활용,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, 마을 관리 등)</li> </ul>  |
| 기업성        | 20   | 정량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</li> </ul>  |
|            |      | 정성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모델의 차별성, 관련 사업수행 실적</li> <li>■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·HACCP 유무, 관련 전문가 보유(자격증 보유자,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) 등</li> <li>■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</li> <li>■ 판매가능성(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)</li> <li>■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</li> </ul> |
| 사업 계획의 적정성 | 10   | 정성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목표설정의 타당성, 사업 계획의 구체성, 실현가능성</li> <li>■ 단가 산출의 적정성, 연내 집행 가능성</li> </ul>  |
| 가점         | 최대 5 | 3<br>(택1)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예비마을기업을 거친 경우(중도포기·취소한 경우 제외)</li> <li>■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·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(대상사업 : 참고)</li> <li>■ 상용근로자수 : (3) 5인이상 (2) 4~2인, (1) 1인</li> </ul>  |
|            |      | 2<br>(택1)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</li> <li>■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(30~50%)을 충족한 경우</li> </ul>  |
|            |      | <p>*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</p> <p>*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</p> |  |

\*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

## ○ 가점 대상 공동체 사업

| 구분 | 소관    | 사업명   |
|----|-------|---|
| 1  | 국조실   | 생활SOC 복합화 사업  |
| 2  | 교육부   |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 |
| 3  | 국토부   |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   |
| 4  | 국토부   | 도시재생 뉴딜사업   |
| 5  | 국토부   | 도시재생 예비사업   |
| 6  | 농식품부  |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   |
| 7  | 농식품부  |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  |
| 8  | 농식품부  |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 |
| 9  | 농식품부  | 귀농귀촌 지원사업(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포함)  |
| 9  | 문체부   | 관광두레 사업   |
| 10 | 복지부   |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사업   |
| 11 | 복지부   |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  |
| 12 | 복지부   |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  |
| 13 | 산림청   |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   |
| 14 | 산림청   |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|
| 15 | 여가부   |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 |
| 16 | 해수부   | 자율어업공동체 선정 및 육성   |
| 17 | 해수부   | 어촌뉴딜300   |
| 18 | 환경부   |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  |
| 19 | 국가유산청 | 우리고장 국가유산(무형유산 포함) 활용 사업  |
| 20 | 국가유산청 | 세계유산 축전 및 활용 프로그램 사업  |
| 21 | 행안부   |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  |
| 22 | 행안부   | 정보화마을   |
| 23 | 행안부   | 청년공동체 육성 사업   |
| 24 | 행안부   |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<br>(주민자치회가 마을기업 설립·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법인 포함)   |
| 25 | 기타    | 그 밖에 일자리 창출,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나<br>자치단체에서 공동체를 육성 또는 지원하는 사업<br>(가점 인정 여부는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) |

## ○ 2회차(재지정) 마을기업

| 심사항목          | 배점 | 심사지표  |
|---------------|----|---|
| 공동체성          | 15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<br/>(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, 회원 규모, 출자액 증가 정도 등)</li> <li>■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</li> <li>■ 마을기업 설립·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·의견수렴 노력</li> <li>■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</li> <li>■ 전문교육 이수</li> </ul>      |
| 공공성           | 25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</li> <li>■ 사회공헌활동의 실적(정량, 정성적 성과)</li> <li>■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</li> <li>■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·유지 노력</li> </ul>  |
| 지역성           | 15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<br/>(지역내 사업장 소재, 지역자원 활용 정도, 지역주민비율)</li> <li>■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</li> <li>■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</li> <li>■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업성           | 25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수행 실적(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·역량 보유 유무)</li> <li>■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(매출 및 이익 등)</li> <li>■ 발전가능성(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)</li> <li>■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</li> <li>■ 지속가능성(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)</li> </ul>              |
| 사업 관리·계획의 적정성 | 1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 관리의 충실성(회계 관리, 지도·점검 협조 등 포함)</li> <li>■ 계획대비 성과 달성을 정도, 계획 이행의 충실성(보조금 집행실적 포함)</li> <li>■ 목표설정의 타당성, 사업 계획의 구체성, 실현가능성</li> <li>■ 단가 산출의 적정성</li> </ul>   |
|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 | 1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</li> <li>■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</li> </ul>   |
| 가점            | 3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</li> <li>■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(30~50%)을 충족한 경우</li> <li>■ 상용근로자수 : (3) 5인이상 (2) 4~2인, (1) 1인</li> </ul> <p>※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<br/>※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</p> |

\*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

## ○ 3회차(고도화) 마을기업

| 심사항목                    | 배점 | 심사지표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|
| 공동체성                    | 1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(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, 회원 규모, 출자액 증가 정도 등)</li> <li>■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</li> <li>■ 마을기업 설립·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·의견수렴 노력</li> <li>■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</li> <li>■ 전문교육 이수</li> </ul>              |
| 공공성                     | 3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</li> <li>■ 사회공헌활동의 실적(정량, 정성적 성과)</li> <li>■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</li> <li>■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·유지 노력</li> </ul>  |
| 지역성                     | 1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(지역내 사업장 소재, 지역자원 활용 정도, 지역주민비율)</li> <li>■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</li> <li>■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</li> <li>■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</li> </ul>  |
| 기업성                     | 3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수행 실적(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·역량 보유 유무)</li> <li>■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(매출 및 이익 등)</li> <li>■ 발전가능성(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)</li> <li>■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</li> <li>■ 지속가능성(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|
| 사업계획의<br>적정성<br>(실적 포함) | 1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계획대비 성과 달성을 정도, 계획 이행의 충실성(보조금 집행실적 포함)</li> <li>■ 사업 관리의 성실성(회계 관리, 지도·점검 협조 등 포함)</li> <li>■ 목표설정의 타당성, 사업 계획의 구체성, 실현가능성</li> <li>■ 단가 산출의 적정성</li> </ul>   |
| 안정적인<br>일자리 창출          | 1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</li> <li>■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</li> </ul>   |
| 가점                      | 3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</li> <li>■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(30~50%)을 충족한 경우</li> <li>■ 상용근로자수 : (3) 5인 이상 (2) 4~2인, (1) 1인</li> </ul> <p>*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<br/>   *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</p> |

\*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